

「민법」

(제1편제1장-제3장)

[법률 제71호, 2016.6.7. 최종개정]

원문	번역문
<p style="text-align: center;">第一編 總則 第一章 通則</p> <p>第一条 (基本原則) 1 私権は、公共の福祉に適合し なければならない。 2 権利の行使及び義務の履行 は、信義に従い誠実に行わな なければならない。 3 権利の濫用は、これを許さ ない。</p> <p>第二条 (解釈の基準) 1 この法律は、個人の尊厳と 両性の本質的平等を旨として、 解釈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 style="text-align: center;">第二章 人 第一節 権利能力</p> <p>第三条 1 私権の享有は、出生に始ま</p>	<p style="text-align: center;">제1편 총칙 제1장 통칙</p> <p>제1조(기본원칙) ① 사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 야 한다. ②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③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 지 아니한다.</p> <p>제2조(해석의 기준) ① 이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하 여 이를 해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사람 제1절 권리능력</p> <p>제3조 ① 사권의 향유는 출생에서 시</p>

る。

2 外国人は、法令又は条約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私権を享有する。

第二節 行為能力

第四条 (成年)

1 年齢二十歳をもって、成年とする。

第五条 (未成年者の法律行為)

1 未成年者が法律行為をするには、その法定代理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単に権利を得、又は義務を免れる法律行為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反する法律行為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法定代理人が目的を定めて処分を許した財産は、その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未成年者が自由に処分することができる。目的を定めずに処分を許した財産を処分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第六条 (未成年者の営業の許可)

1 一種又は数種の営業を許された未成年者は、その営業に関しては、成年者と同一の行

작한다.

②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으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제2절 행위 능력

제4조(성년)

① 만 20세로 성년으로 한다.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의 허가)

① 일종 또는 수종의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

為能力を有す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未成年者がその營業に堪えることができない事由があるときは、その法定代理人は、第四編（親族）の規定に従い、その許可を取り消し、又はこれ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條（後見開始の審判）

1 精神上の障害により事理を弁識する能力を欠く常況にある者については、家庭裁判所は、本人、配偶者、四親等内の親族、未成年後見人、未成年後見監督人、保佐人、保佐監督人、補助人、補助監督人又は檢察官の請求により、後見開始の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八條（成年被後見人及び成年後見人）

1 後見開始の審判を受けた者は、成年被後見人とし、これに成年後見人を付する。

第九條（成年被後見人の法律行為）

1 成年被後見人の法律行為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ただし、日用品の購入その他日常生活に関する行為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營業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후견개시의 심판)

①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①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서 이에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①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十条 (後見開始の審判の取消し)

1 第七条に規定する原因が消滅し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本人、配偶者、四親等内の親族、後見人(未成年後見人及び成年後見人をいう。以下同じ。)、後見監督人(未成年後見監督人及び成年後見監督人をいう。以下同じ。)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後見開始の審判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一条 (保佐開始の審判)

1 精神上的の障害により事理を弁識する能力が著しく不十分である者については、家庭裁判所は、本人、配偶者、四親等内の親族、後見人、後見監督人、補助人、補助監督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保佐開始の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七条に規定する原因がある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十二条 (被保佐人及び保佐人) 1 保佐開始の審判を受けた者は、被保佐人とし、これに保佐人を付する。

第十三条 (保佐人の同意を要する行為等)

1 被保佐人が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には、その保佐人の同意

제10조(후견개시의 심판의 취소)

①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①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보좌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① 보좌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서 이에 보좌인을 붙인다.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① 피보좌인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좌인의 동

을得なければならぬ。ただし、第九條ただし書に規定する行為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元本を領収し、又は利用すること。

二 借財又は保証をすること。

三 不動産その他重要な財産に関する権利の得喪を目的とする行為をすること。

四 訴訟行為をすること。

五 贈与、和解又は仲裁合意(仲裁法(平成十五年法律第一百三十八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仲裁合意をいう。)をすること。

六 相続の承認若しくは放棄又は遺産の分割をすること。

七 贈与の申込みを拒絶し、遺贈を放棄し、負担付贈与の申込みを承諾し、又は負担付遺贈を承認すること。

八 新築、改築、増築又は大修繕をすること。

九 第六百二條に定める期間を超える賃貸借をすること。

2 家庭裁判所は、第十一条本文に規定する者又は保佐人若しくは保佐監督人の請求により、被保佐人が前項各号に掲げる行為以外の行為をする場合であってもその保佐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ぬ旨の審判をすること

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일.

2. 재물을 빌리거나 보증하는 일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 행위를 하는 일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 [중재법(평성 15년<2003>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재 합의를 말한다]를 하는 일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을 분할하는 일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 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 유증을 승인하는 일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일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일

②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とができる。ただし、第九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行為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3 保佐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ぬ行為について、保佐人が被保佐人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同意をしないときは、家庭裁判所は、被保佐人の請求により、保佐人の同意に代わる許可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4 保佐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ぬ行為であつて、その同意又はこれに代わる許可を得ないでしたもの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十四条 (保佐開始の審判等の取消し)

1 第十一条本文に規定する原因が消滅し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本人、配偶者、四親等内の親族、未成年後見人、未成年後見監督人、保佐人、保佐監督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保佐開始の審判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家庭裁判所は、前項に規定する者の請求により、前条第二項の審判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十五条 (補助開始の審判)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좌개시 심판 등의 취소)

① 제11조 본문에 정한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좌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3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1 精神上の障害により事理を弁識する能力が不十分である者については、家庭裁判所は、本人、配偶者、四親等内の親族、後見人、後見監督人、保佐人、保佐監督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補助開始の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七条又は第十一条本文に規定する原因がある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本人以外の者の請求により補助開始の審判をするには、本人の同意がなければならない。

3 補助開始の審判は、第十七条第一項の審判又は第八百七十六条の九第一項の審判ととも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六条 (被補助人及び補助人)

1 補助開始の審判を受けた者は、被補助人とし、これに補助人を付する。

第十七条 (補助人の同意を要する旨の審判等)

1 家庭裁判所は、第十五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者又は補助人若しくは補助監督人の請求により、被補助人が特定の法律行為をするにはその補助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旨の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

①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개시의 심판을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 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 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①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서 보조인을 붙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①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자, 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 행위를 함에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의를

その審判によりそ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する事ができる行為は、第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行為の一部に限る。

2 本人以外の者の請求により前項の審判をするには、本人の同意がなければならない。

3 補助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について、補助人が被補助人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同意をしないときは、家庭裁判所は、被補助人の請求により、補助人の同意に代わる許可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4 補助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であって、その同意又はこれに代わる許可を得ないでしたもの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十八条 (補助開始の審判等の取消し)

1 第十五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原因が消滅し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本人、配偶者、四親等内の親族、未成年後見人、未成年後見監督人、補助人、補助監督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補助開始の審判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家庭裁判所は、前項に規定する者の請求により、前条第一

項を要する行為は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の一部에 한한다.

②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심판을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보조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보조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 심판 등의 취소)

① 제15조제1항 본문에 정한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7

項の審判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3 前条第一項の審判及び第八百七十六條の九第一項の審判をすべて取り消す場合には、家庭裁判所は、補助開始の審判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九条 (審判相互の關係)

1 後見開始の審判をする場合において、本人が被保佐人又は被補助人であ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その本人に係る保佐開始又は補助開始の審判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保佐開始の審判をする場合において本人が成年被後見人若しくは被補助人であるとき、又は補助開始の審判をする場合において本人が成年被後見人若しくは被保佐人である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十条 (制限行為能力者の相手方の催告権)

1 制限行為能力者（未成年者、成年被後見人、被保佐人及び第十七條第一項の審判を受けた被補助人をいう。以下同じ。）の相手方は、その制限行為能力者が行為能力者（行為能力の制限を受けない者をいう。以下同じ。）となった後、その者に対し、一箇月以上の期間を

조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7조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간의 관계)

① 후견인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에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보좌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때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인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①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

定めて、その期間内にその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行為を追認するかどうかを確答すべき旨の催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期間内に確答を發しないときは、その行為を追認したものとみなす。

2 制限行為能力者の相手方が、制限行為能力者が行為能力者とならない間に、その法定代理人、保佐人又は補助人に対し、その権限内の行為について前項に規定する催告をした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者が同項の期間内に確答を發しないときも、同項後段と同様とする。

3 特別の方式を要する行為については、前二項の期間内にその方式を具備した旨の通知を發しないときは、その行為を取り消したものとみなす。

4 制限行為能力者の相手方は、被保佐人又は第十七条第一項の審判を受けた被補助人に対しては、第一項の期間内にその保佐人又は補助人の追認を得べき旨の催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被保佐人又は被補助人がその期間内にその追認を得た旨の通知を發しないときは、その行為を取り消したものとみなす。

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기간에 그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에 이들이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③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第二十一条 (制限行為能力者の詐術)

1 制限行為能力者が行為能力者であることを信じさせるため詐術を用いたときは、その行為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ない。

第三節 住所**第二十二条 (住所)**

1 各人の生活の本拠をその者の住所とする。

第二十三条 (居所)

1 住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を住所とみなす。
2 日本に住所を有しない者は、その者が日本人又は外国人のいずれであるかを問わず、日本における居所をその者の住所とみなす。ただし、準拠法を定める法律に従いその者の住所地法によるべき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二十四条 (仮住所)

1 ある行為について仮住所を選定したときは、その行為に関しては、その仮住所を住所とみなす。

第四節 不在者の財産の管理**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①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3절 주소**제22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②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① 어느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4절 부재자의 재산 관리

及び失踪の宣告

第二十五条 (不在者の財産の管理)

1 従来 of 住所又は居所を去った者(以下「不在者」という。)がその財産の管理人(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管理人」という。)を置かなかつ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利害関係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その財産の管理について必要な処分を命ずることが出来る。本人の不在中に管理人の権限が消滅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後、本人が管理人を置い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その管理人、利害関係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その命令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ぬ。

第二十六条 (管理人の改任)

1 不在者が管理人を置いた場合において、その不在者の生死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家庭裁判所は、利害関係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管理人を改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七条 (管理人の職務)

1 前二条の規定により家庭裁判所が選任した管理人は、その管理すべき財産の目録を作成し

및 실종의 선고

제25조(부재자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이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改任))

①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할 재산의 목

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費用は、不在者の財産の中から支弁する。

2 不在者の生死が明らかでない場合において、利害関係人又は検察官の請求があ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不在者が置いた管理人にも、前項の目録の作成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家庭裁判所は、管理人に対し、不在者の財産の保存に必要と認める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八条 (管理人の権限)

1 管理人は、第百三条に規定する権限を超える行為を必要とするときは、家庭裁判所の許可を得て、その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不在者の生死が明らかで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管理人が不在者が定めた権限を超える行為を必要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第二十九条 (管理人の担保提供及び報酬)

1 家庭裁判所は、管理人に財産の管理及び返還について相当の担保を立て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家庭裁判所は、管理人と不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②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재자가 둔 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목록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인의 권한)

① 관리인이 제103조(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의 권한)에서 규정하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관리인이 부재자가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 가정법원은 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관리인과 부재자

在者との関係その他の事情により、不在者の財産の中から、相当な報酬を管理人に与え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条 (失踪の宣告)

1 不在者の生死が七年間明らかでないときは、家庭裁判所は、利害関係人の請求により、失踪の宣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戦地に臨んだ者、沈没した船舶の中に在った者その他死亡の原因となるべき危難に遭遇した者の生死が、それぞれ、戦争が止んだ後、船舶が沈没した後又はその他の危難が去った後一年間明らかでない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三十一条 (失踪の宣告の効力)

1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失踪の宣告を受けた者は同項の期間が満了した時に、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失踪の宣告を受けた者はその危難が去った時に、死亡したものとみなす。

第三十二条 (失踪の宣告の取消し)

1 失踪者が生存すること又は前条に規定する時と異なる時に

와의 관계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부재자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실종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7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그친 후, 선박이 침몰한 후 또는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실종선고의 효력)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종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종의 선고를 받은 자는 위난이 종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가 생존하거나 또는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때와 다

死亡したことの証明があっ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本人又は利害関係人の請求により、失踪の宣告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取消しは、失踪の宣告後その取消し前に善意でした行為の効力に影響を及ぼさない。

2 失踪の宣告によって財産を得た者は、その取消しによって権利を失う。ただし、現に利益を受けている限度においてのみ、その財産を返還する義務を負う。

第五節 同時死亡の推定

第三十二条の二

1 数人の者が死亡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うちの一人が他の者の死亡後になお生存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これらの者は、同時に死亡したものと推定する。

第三章 法人

第三十三条 (法人の成立等)

1 法人は、この法律その他の法律の規定によらなければ、成立しない。

2 学術、技芸、慈善、祭祀、宗教その他の公益を目的とする

른 때에 사망한 것에 관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취소는 실종의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의 선고로 재산을 얻은 자는 그 취소로 인하여 권리를 잃는다. 다만, 현재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만 그 재산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제5절 동시사망의 추정

제32조의2

① 사망한 수인(数人) 중 1인이 다른 자의 사망 후 더 생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법인

제33조(법인의 성립)

① 법인은 이 법률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

法人、營利事業を営むことを目的とする法人その他の法人の設立、組織、運営及び管理については、この法律その他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三十四条 (法人の能力)

1 法人は、法令の規定に従い、定款その他の基本約款で定められた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権利を有し、義務を負う。

第三十五条 (外国法人)

1 外国法人は、国、国の行政区画及び外国会社を除き、その成立を認許しない。ただし、法律又は条約の規定により認許された外国法人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認許された外国法人は、日本において成立する同種の法人と同一の私権を有する。ただし、外国人が享有することのできない権利及び法律又は条約中に特別の規定がある権利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十六条 (登記)

1 法人及び外国法人は、この法律その他の法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登記をするものとする。

는 법인,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의 법인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이 법률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법인의 능력)

① 법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 또는 기본약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제35조(외국법인)

① 외국법인은 국가, 국가의 행정구획 및 외국회사를 제외하고 그 성립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인가되는 외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외국법인은 일본에서 성립하는 동종의 법인과 동일한 사권을 가진다. 다만, 외국인이 향유할 수 없는 권리 및 법률 또는 조약 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등기)

① 법인 및 외국법인은 이 법률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한다.

第三十七条 (外国法人の登記)

1 外国法人（第三十五条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外国法人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日本に事務所を設けたときは、三週間以内に、その事務所の所在地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登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外国法人の設立の準拠法

二 目的

三 名称

四 事務所の所在場所

五 存続期間を定めたときは、その定め

六 代表者の氏名及び住所

2 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を生じたときは、三週間以内に、変更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登記前にあっては、その変更をもって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代表者の職務の執行を停止し、若しくはその職務を代行する者を選任する仮処分命令又はその仮処分命令を変更し、若しくは取り消す決定がされたときは、そ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項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

4 前二項の規定により登記すべき事項が外国において生じたときは、登記の期間は、その通

제37조(외국법인의 등기)

① 외국법인(제35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외국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일본에 사무소를 둘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에 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 설립의 준거법

2. 목적

3.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장소

5.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 전에는 그 변경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하는 가처분명령 또는 그 가처분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때에는 등기기간

知が到達した日から起算する。

5 外国法人が初めて日本に事務所を設けたときは、その事務所の所在地において登記するまでは、第三者は、その法人の成立を否認することができる。

6 外国法人が事務所を移転したときは、旧所在地においては三週間以内に移転の登記をし、新所在地においては四週間以内に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登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同一の登記所の管轄区域内において事務所を移転したときは、その移転を登記すれば足りる。

8 外国法人の代表者が、この条に規定する登記を怠ったときは、五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第三十八条 削除～
第八十四条 削除

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외국법인이 최초로 일본에 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에서登記할 때까지는 제3자는 그 법인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다.

⑥ 외국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登記하여야 한다.

⑦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을登記하면 충분하다.

⑧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이 조에서 규정하는 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5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38조부터 제84조까지 삭제